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의 권익보호 명시 등 >

■ 최보운·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508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장애인의 권익보호 명시(안 제3조의2 신설) .....                     | 2 |
|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위원 포함(안 제35조제2항 후<br>단 신설) ..... | 6 |
| 3.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 상향 입법(안 제69조 등) .....                 | 9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서미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6.

다. 회 부 일 : 2024. 12.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장애인의 권익보호 명시(안 제3조의2 신설)

#####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법」(이하 “법”) 제3조의2에 “장애인의 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동등하게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안 제3조의2제1항), 방송출연할 수 있도록(안 제3조의2제2항)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 법 제33조제2항제7호1)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공포하는 방송심의규정에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69조제8항·제9항2)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70조제3항3)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2)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송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익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편성 및 제작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이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까지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은 필요해보임.

○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 연합뉴스,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은 법상 보장되는 방송의 기획,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과 개정안의 내용이 상충될 수 있고, 각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임.

□ 둘째,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제3조의2”로 두고 있는데, 법의 목적 및 법 제3조4)가 “시청자의 권익보호”라는

---

4)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점 및 시청자의 개념에 이미 장애인을 포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권익보호가 제3조의2에 규정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  
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이바지”  
하는 것으로, 동 법은 방송 및 시청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 등 전반의 과정에 참  
여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동법은 장애인의  
권익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님.

○ 이에 따라, 제3조의 시청자와 병렬적으로 제3조의2에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기  
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고, 특정 시청자의 방송참여 권리만 보장하는 것  
은 미디어다양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위원 포함(안 제35조제2항 후단 신설)

###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법 제35조<sup>5)</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장애인을 1명 포함시키려는 것임.

○ 법 제35조제1항은 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통위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위원 중 1명 이상의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第35條(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생 략)                                  | 第35條(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후단 신 | ② -----<br>-----<br>-----   |

- 5)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u>설&gt;</u><br><br>③ (생 략) | -. 이 경우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br><u>어야 한다.</u><br><br>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 의견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조 및 제7조6)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규칙 제6조7)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방통위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을 7명

6)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규칙 제7조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함.

- 개정안은 현재에도 규칙에 따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나, 여성위원 구성 등과의 체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방통위 또한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1명 이상’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다른 위원과 동일하게 규칙에서 구성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3.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 상향 입법(안 제69조 등)

####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법 제69조제8항·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과 법 시행령 제52조<sup>8)</sup> 장애인의 시청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69조의3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제9항 및 안 제69조의3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br>⑦ (생 략)<br>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br>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br>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br>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br>⑦ (현행과 같음)<br><삭 제> |

8)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u>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⑩·⑪ (생략)</u></p> <p><u>&lt;신설&gt;</u></p> | <p><u>&lt;삭제&gt;</u></p> <p><u>⑩·⑪ (현행과 같음)</u></p> <p><u>제69조의3(장애인의 시청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지상파방송사업자</u></li> <li><u>2. 위성방송사업자</u></li> <li><u>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u></li> <li><u>4.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li> </ol> <p><u>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장애</u></p> |

| 현행 | 개정안                                                                                                                                                                                                                                                                                                                                                                                                                                                                                                                                                                                            |
|----|------------------------------------------------------------------------------------------------------------------------------------------------------------------------------------------------------------------------------------------------------------------------------------------------------------------------------------------------------------------------------------------------------------------------------------------------------------------------------------------------------------------------------------------------------------------------------------------------|
|    | <p><u>인방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u></p> <p>1. 「<u>방송통신발전 기본법</u>」 제40조에 따른 <u>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u></p> <p>2. 「<u>장애인복지법</u>」 제22조제2항에 따른 <u>방송프로그램</u></p> <p>3. <u>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u></p> <p>4. 그 밖에 <u>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u></p> <p>③ <u>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④ 그 밖에 <u>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u></p> |

나. 검토 의견

-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방송의 실시 및 시청지원에 관련된 법조문을 신설할 경우 현재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제69조)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현재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다만, 방통위는 이러한 상향입법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 등을 위촉 시켜 오히려 장애인 권리 보호 목적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226 |
|--------------|